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92호 (2015-24) 발행일 : 2015. 09. 07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sup>1)</sup>

사업간의 유사성·중복성은 업무의 중복성, 분절성, 비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사업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체감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 요청됨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성·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이력 분석 결과에서도 중복수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통합(소규모 유관사업 통합 및 패키지화, 사업운영 부처·부서 일원화), 사업관리 개선, 전달체계 개선(서비스기관 일원화, 협력 강화)'의 조정안이 검토됨. 이는 한가지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사업별 욕구 및 대상 특성, 사업의 성숙도에 따른 운영 여건의 차이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강혜규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

### 1. 논의의 배경

#### ■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점검의 필요성

-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이 분절적,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 오  
- 총리실 주관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2009.6)」에서 유사·중복사업 조정안<sup>2)</sup>이 발표되었고, 이후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는 지속적으로 정책이슈로 부각됨
- 사업간의 '유사·중복'은 업무의 중복성, 분절성, 비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사업의 복잡성으로 인한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체감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유사성과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 요청됨

1) 본 원고는 강혜규·강신욱·박세경·정경희·김용득·유태균·주무현·최영준·함영진·권소일(201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보완하여 작성함

2) 9개 부처 수행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 159개로 조정함

- ‘정부 3.0’ 컨셉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요자 욕구별로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핵심적이지만, 이와 함께 간결하되 탄력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발굴, 조정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중복 및 누수의 감소를 통해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도 가능해짐

■ 검토 목적 및 방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개별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사회보장사업 유사성·중복성 분석의 목적은, 조정이 필요한 유사사업을 발굴하고 조정안을 모색·제시하는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의 내용과 절차를 통해 결과를 도출함
  - 취합된 자료의 기초 현황 분석, 유사중복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별 분석을 실시하고, 유사사업간 조정 필요성을 검토,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함
    - 아래의 절차와는 별개로 사회보장사업 수급이력 분석을 실시, 2014년 1년간 사회보장사업 수급 과정에서 전 수급자에게 중복 수급이 있었는지 확인함

현황 분석	유사성·중복성 분석	조정 필요성 확인	조정 방안 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부 취합 데이터’로 360개 사업의 목적·기능, 대상(생애주기, 소득계층), 급여유형, 예산, 전달체계 등의 특성을 분석	‘유사 목적’의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범위, 급여유형, 사업 방식 등의 일치 여부 확인	사업 영역별(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특성을 감안, 제도운영의 효율성, 수요자 체감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정 필요사업의 확인	유사사업간 조정안 검토 • 사업 통합 (소규모 유관 사업통합 및 패키지화, 사업운영 부처·부서 일원화) • 사업관리개선, 전달체계 개선(서비스기관 일원화, 협력 강화)

주: 1) 2014년 기준 사업으로서, 정부는 국가예산 및 조세지출 사회보장사업의 목록과 현황을 정리(360개)하여, 기존 17개 중앙행정기관 292개 사업을 220개로 재분류하고 새로 조사된 140개를 추가하여, 21개 중앙행정기관 360개 사업으로 분류함(강혜규 외, 2015:13)

자료: 강혜규 외(2015: 2)

## 2. 사회보장정책 분석과 중복·유사 개념의 정의

- ‘중복, 유사’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검증된 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정책적 관점에서 활용되는 실용적 개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개념임.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사업에서의 중복, 유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중복사업: ‘동일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목적 및 급여유형’의 사업이 각각 (다른 부처, 부서, 동일 부서 내) 존재하는 경우
    - 서비스 ‘중복’은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과 공급자 관점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가장 정확한 ‘중복’의 확인은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한 구성의 서비스(서비스 내용 및 양, 급여유형 등)를 2가지 이상 이용·제공받는 경우라는, 수요자 기준의 검토가 될 것임.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급이력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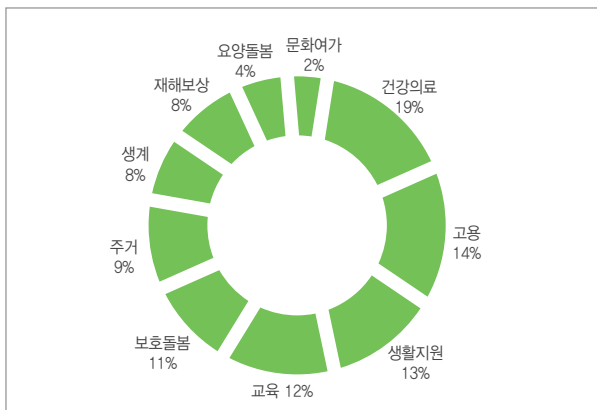
- 공급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복의 이슈는 제도의 설계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사업의 목적, 대상요건(자격기준), 급여내용(유형, 수준), 전달체계 등과 관련됨
- 유사사업: 사업의 ‘목적·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거나, ‘급여유형(제공형태)’이 유사한 경우
  - 제공형태(현금급여, 현물급여, 서비스, 바우처 등)만 동일한 경우는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 3. 사회보장사업 실태 분석 결과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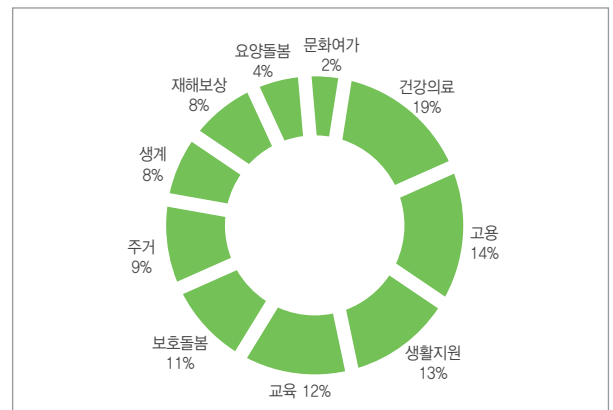
#### ■ 사회보장사업의 목적·기능별 현황

-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목적·기능(10개 범주)”별 분포를 보면 건강·의료(19%), 고용(14%), 생활지원(13%), 교육(12%), 보호·돌봄(11%) 영역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를 사업의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주거 영역 예산이 28.3%로 사업 수는 적지만 예산 규모는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생계(18.0%), 교육(16.9%), 건강·의료(13.0%), 보호·돌봄(10.7%)의 순으로, 사업 수의 기준과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유사 및 중복에 초점을 둔 그간의 사업실태 파악 과정에서는 사업의 ‘수’에 주목해 왔음. 그러나, 보다 정확한 현황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업의 예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예컨대, 예산으로 보면 주거분야 사업의 95%를 운영하는 국토부의 사업이 전체 사회보장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업 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음

[그림 1] 360개 사회보장사업 현황(사업 수 기준)



[그림 2] 360개 사회보장사업 현황(예산 기준)



자료: 강혜규 외(2015: 289)

#### ■ 사회보장사업의 소관부처와 사업 비중

- 사회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하여, ‘복지’ 성격의 사업을 운영하는 유관부처의 수는 21개가 되었음
  - 2009년 제시된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에는 9개 부처 사업(249개)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복지부 사업(148개)은 59.4%를 차지하였음(총리실 주관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2009.6)」)

-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사업 비중이 크고, 핵심적인 사회보장 기능을 위한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을 위한 유관부처의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되어 복지부의 사업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8.9%로 낮아짐(예산 기준으로도 41.3%). 이는 결국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서는 유관부처가 함께 그 목표와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함

〈표 1〉 사회보장사업의 부처별 현황('14년 기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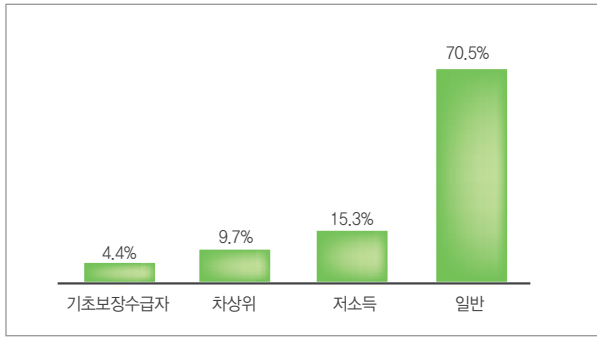
		경찰청	고령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계	
아	영유아	-	1	1	-	-	-	-	1	-	-	-	14	-	-	-	-	-	-	-	-	-	-	17
	아동	-	-	2	-	-	-	-	-	-	-	-	4	-	-	-	-	1	-	-	-	-	-	7
	청소년	-	1	6	-	-	-	-	-	-	-	-	-	-	-	-	-	14	-	-	-	-	-	21
	전체 아동	1	2	6	3	-	-	-	2	-	-	-	22	-	-	-	-	10	-	2	-	-	1	49
	소계	1	4	15	3	-	-	-	3	-	-	-	40	-	-	-	-	25	-	2	-	-	1	94
인	청년	-	1	5	-	-	-	-	-	-	1	-	1	-	-	-	-	-	-	-	-	-	-	8
	중장년	-	1	-	3	-	-	-	-	-	-	-	3	-	-	-	-	1	1	-	-	-	-	9
	노년	-	4	-	8	1	1	-	-	1	1	1	19	-	-	-	-	1	-	-	-	-	-	37
	전체 성인	-	26	-	20	12	3	2	5	1	4	-	38	3	4	1	2	5	7	6	1	2	2	142
	소계	-	32	5	31	13	4	2	5	2	6	1	61	3	4	1	2	7	8	6	1	2	2	196
일반		-	-	1	3	1	-	-	-	3	3	2	39	-	2	-	-	12	-	2	1	1	1	70
계		1	36	21	37	14	4	2	8	5	9	3	140	3	6	1	2	44	8	10	2	4	360	

자료: 강혜규 외(201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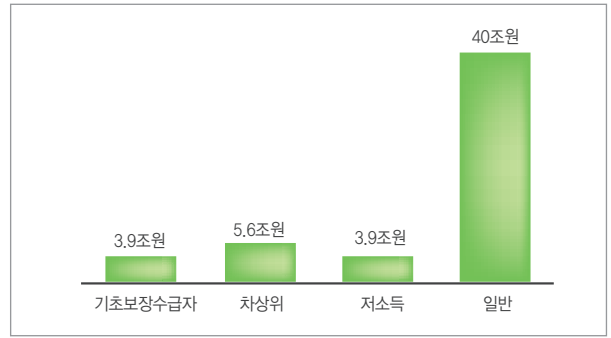
### ■ 대상 특성별 사업 분포

- 사업의 주 대상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사회보장사업 중 저소득층, 특히 기초보장 수급자에 집중되는 사업의 예산액은 (예산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일반(전국민) 대상사업이 70.6%(예산은 74.9%)로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보장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는 4.4%(예산은 7.3%),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되는 사업은 9.7%(예산은 10.5%)에 불과함
- 그간 ‘사회복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의 문제, ‘all or nothing’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특정계층 급여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이만우 · 김영수: 2012)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혹은 120% 이하를 대상 선정조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복지급여의 특정 소득계층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기초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간,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간 수급가능한 복지사업 수의 차이가 각각 크다’고 평가함. 이는 급여 기준과 관련하여 일리 있는 지적임
  - 또한, 국민 대상사업의 경우 기초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상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의 설계상으로는 저소득층 집중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그림 3]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소득계층별 현황(사업 수 기준)



[그림 4]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소득계층별 현황(예산 기준)



자료: 강혜규 외(2015: 291)

- 사업의 주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의 25.8%가 아동, 54.4%가 성인, 나머지 19.7%는 일반(아동+성인) 대상 사업이었음
  - 사업예산을 보면, 아동사업 11.4조원, 성인사업 33.8조원, 일반사업 8.4조원으로서, 아동대상 사업 21.3%, 성인대상 사업 63.2%, 일반(아동+성인)대상 사업 15.6%였음
  - 생애주기를 세분하여 보면,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43.4%로 가장 예산 투입이 많았고, 다음은 영유아사업 14.1%, 노인사업 12.7%였음

<표 2> 사회보장사업 대상의 생애주기별 현황('14년 기준)

(단위: 개, 십억원)

	아동					성인					일반	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체 아동	소계	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 성인	소계		
사업 수	17	7	21	48	93	8	9	37	142	197	71	360
(%)	[4.7]	[1.9]	[5.8]	[13.3]	[25.8]	[2.2]	[2.5]	[10.3]	[39.4]	[54.4]	[19.7]	[100.0]
예산	7,560	406	566	2,842	11,374	3,732	67	6,771	23,188	33,758	8,338	53,469
(%)	[14.1]	[0.8]	[1.1]	[5.3]	[21.3]	[7.0]	[0.1]	[12.7]	[43.4]	[63.2]	[15.6]	[100.0]

주: 1) 사업예산은 '14년 기준 국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교부금등)를 포함, 건강보험사업 및 국제감면 등 15개 사업은 미포함  
 자료: 강혜규 외(2015: 33)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업의 수급 현황 분석 결과

-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자별 ‘수급이력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4년 1년간 수급이력이 조회된 약 2,800만명의 수급자는 평균 1.78개의 복지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60% 이상의 수급자들이 1개의 복지사업을 받고 있었음
  - 전체 수급자 중 92%가 3개 미만, 99%가 10개 미만의 복지사업을 제공받음(15개 이상 292명, 16개 이상 59명, 최대 18개의 복지사업 수급자가 3명)
  - 15개 이상 수급자(292명)의 경우, 모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문화통합이용권 258명, 의료급여 240명,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232명, 지방세감면 204명 순으로 높은 이용 빈도를 보임
- 중복수급 여부를 검토한 결과(15개 이상의 복지사업 수급이력 292명 대상), 복지 ‘사업’ 단위에서 수급자 95명의 중복수급 의심 건이 도출됨. 그러나 복지사업의 하위단위인 ‘세부서비스’ 단위에서 개인별 수급이력을 확인한 결과 중복수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즉, 사업단위에서는 중복수급을 의심할 수 있으나, 세부서비스 단위에서 동일대상이 동일시점에 동일한 서비스를 중복수급한 사례는 없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중복수급 예방을 위해 8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152개 중복방지 로직을 설정, 유사중복 사업간 중복수급을 예방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중복수급 사전차단을 위한 86개의 사업간 중복수급 방지 로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은 66개 유형으로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사전 차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은 사후 모니터링<sup>3)</sup>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중복수급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

## 4.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 분석 결과와 조정 방안

### ■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한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방향

-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의 중복성,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음
  - 동일 대상에 대한 완전히 동일한 목적, 동일한 수단(급여유형등 지원내용,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이력 분석 결과에서도 급여의 중복 수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유사’사업의 사업 목적·기능, 대상, 급여내용 등을 분석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사사업들은 다음과 같이 20개 사업군으로 정리되었음
  -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성 여부를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가름하기는 어려움. 세부사업 영역별 욕구 및 사업대상 특성, 사업의 성숙도에 따른 운영 여건의 차이 등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명칭과 기본 특성으로 파악되는 유사사업을 일차적으로 추정하고, 주요 사업분야 별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유사사업을 판단함. 발굴된 유사사업군에 대하여 조정 방안을 제시함
  - 조정방안은 ‘사업 통합(소규모 유관사업 통합 및 패키지화, 사업운영 부처·부서 일원화), 사업관리 개선, 전달체계 개선(서비스기관 일원화, 협력 강화)’ 등의 대안을 중심으로 하지만,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배타적인 개선안이 아닌 보완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사업군별로 마련함(20개 사업군 60개 사업 포함)

〈표 4〉 유사성이 발견된 20개 사업군의 조정안

사업 유형	대상 사업	조정 방안
영유아 돌봄사업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시간차등형보육료지원(복지부)	개별 단위사업 차원의 조정 모색에 앞서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료 지원사업과 양육수당제도, 아이돌봄지원사업 간의 관계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논의 필요
방과후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연합(joined-up services) 방안, 방과후 돌봄 운영의 다양한 모형을 마련,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듈화 방안 검토
위기아동 통합지원 사업	드림스타트사업(복지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부)	지역사회 아동중심 보호·지원체계의 개편·확립 방안 마련이 필요 취약계층 중심의 대상자 선정을 위기관리 중심으로 전환, 지역단위 아동보호의 거점 통합기구 설치를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연대협력 체계 마련

3) 사업 특성 및 제공기관 특성, 정보연계 및 이력관리의 한계 때문에 사전 차단과 사후차단이 혼재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 독거노인응급안전망구축사업(복지부) 독거노인U-CARE시스템운영(복지부)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복지부) 독거노인보호지원(복지부)	모두 독거노인(2011년 기준 전체노인의 20%) 대상의 사업이므로 통합하여 독거노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수요 공급 분석, 공적 전달체계 점검, 공-사 역할분담 방안 마련 필요
기능저하 노인보호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복지부)	현행 등급내 노인 보호와 등급외 노인 보호체계를 유지하되 예방급여 도입, 케어메니지먼트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연속적 보호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복지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행자부)	(단기) 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을 중심으로 '노인' 대상(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연계, 일자리 성격별 차별화된 전략 마련 (장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과 전 연령층 대상 일자리사업에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 중 어떠한 접근이 효과적인지 점검하여 대안 마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복지부) 의료급여사업(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사업(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 내용상 중복은 없고 필요성도 인정되나, 유사사업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해나 전달체계 관리면에서 더 적절할 것이므로, 장애인의료비 예산항목을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예산으로 통합하여 각 제도에서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내용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부)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복지부)	두 사업은 목적, 내용, 전달체계가 거의 동일한 사업이므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제도를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제도에 통합하고, 제도 대상의 기술에서 '단,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300%이하임을 표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방송통신 접근권 지원사업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지역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방통위)	사업별 대상은 다르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전달체계가 매우 유사하므로 세 사업의 명칭을 '방송통신접근권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수당) (고용부)	훈련수당의 지급조건, 기준, 액수 등은 모두 동일하며, 재원의 출처도 장애인고용기금으로 동일하므로, 두 사업을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복지부) 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범주에 속해 있는 사업으로 실제의 조정은 불필요하나, 사업 분류 통합 수준의 조정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통합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교체(환경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환경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자부)	기초보장 주거급여 중 자가 대상 현물급여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 단계적 통합 검토(각 사업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
에너지지원 사업	에너지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산자부) 연탄 현물(쿠폰)보조(산자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산자부)	사업방식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실질적으로 에너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방향 고려
생활안정 지원사업	예술인 긴급복지(창작준비금)지원(문화부) 긴급복지 생계비지원(복지부)	예술인제도는 타 현금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와의 통합 시 예술인 소득활동의 특수성(근로활동으로부터 소득발생까지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근로소득장려금(복지부) 근로장려세제(기재부) 희망키움통장(복지부)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기초보장수급가구까지 확대되므로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의 통합이 불가피, 보다 포괄적인 근로장려세제로 통합(희망 키움통장은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하지만 소득지원이 아닌 자산형성지원이므로 통합은 부적절)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지원	희망리본사업(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2015년부터 통합 운영 기 결정
공공근로형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행자부) 공공근로사업(지자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통합 검토, 각 사업의 기존 운영방식을 승계하기보다 지역노동시장의 조건(실업률, 취약계층 규모, 민간일자리 창출능력 등)이 지역별 사업규모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장년일자리 지원사업	60세이상고령자 고용지원(고용부)/ 고령자다수 고용지원(고용부) 정년연장지원(고용부)/ 정년퇴직자 재고용(고용부)	고용노동부 장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동일 연령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필요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가부)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전달체계의 간소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원스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산림청 일자리사업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산림청)	산림청의 사업 관리운영체계를 합리화하여 사업간 모집, 선발, 인력풀을 공동관리 하고 활용
장애인 대상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지급(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고용부)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장애인사업장(고용부)/ 장애인 창업지원(중기청) 저소득장애인·중증장애인 영업장소제공(중기청)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운영(중기청)	장애인 일자리 종합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의 one-stop system을 구축하는 부처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 조정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운영방안 효율화 모색

## 5. 정책 과제

-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점검하고 한국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정부부처의 편제는 부처간 유사사업의 실시를 피하기 어려운 여건임. 기능중심의 부처와 대상자 기준의 부처가 공존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라 할 수 있음(예컨대, 교육·보육 지원사업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일자리 지원사업의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여가부 등)
    - 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복지 영역이 보편적인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복지성격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 변화가 반영됨
    -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은 일면 제도화의 수준, 성숙도와 연관할 수 있음(특히 다양한 제도들이 실험되고 작은 규모로 신설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 분석한 사회보장사업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제도'로 인식되는 '사업'과 사업 내 '단위서비스'가 혼재되어, 실제 사업 보다 많게 보이는 착시를 갖게 함. 이는 사회보장 유관 영역의 사업 및 예산 관리상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정비가 가능한 사안임
  - 이와 같은 상황이 불가피한 혹은 비의도적인 결과라고 해도, 이는 장·단기적인,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정비 노력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기획재정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중복, 유사사업이 점검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함
    -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에서 출발한 조정안의 마련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장기적 전망 속에서 수요자의 욕구 특성·규모를 중심으로 통합적 제도의 설계가 준비되어야 함
- 유사·중복의 담론은 자원의 제약을 기반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중복의 제거, 유사사업 운영의 최소화는,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향상, 수요자 입장의 편의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일 수 있음. 그러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실증되지 않은 담론 차원의 유사·중복 논의는 막연한 불신과 복지 축소로 오도될 수 있으므로, 근거기반의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수적임
    - 우리의 경우 중복은 곧 낭비로,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수요자의 선택, 욕구의 충족 수준을 고려한다면, 제거하는 방안이 최선인가가 검토되어야 함
    - 유사·중복의 점검과 함께 누락, 편중, 분절의 차원도 심도 있는 추적, 분석이 요청됨
  - 사회보장사업 운영의 두 축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 사회보장 역할, 협력 관계를 위한 검토가 요청됨
    - 지자체 복지사업과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 영역별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사업과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사업이 검토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재원 확보의 제도적 기반 개선 등에 대한 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집필 | 강혜규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 044-287-8230

발행인 | 김상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